

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218호)

2023년 12월 12일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23. 11. 10.
- 나. 제출 자 : 박기홍 의원
- 다. 위원회 회부 : 2023. 11. 15.
- 라. 위원회 심사 : 2023. 11. 27.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기홍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 (현행)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
(변경)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능정보화 조례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
 - 안 제1조 : 국가정보화 기본법 → 지능정보화 기본법
 - 안 제1조, 제3조, 제5조부터 제8조까지 : 지역정보화 → 지능정보화
 - 안 제4조 : 시행계획 → 실행계획

- 안 제5조 : 정보화책임관 → 지능정보화책임관
- 안 제6조 : 지역정보 통합센터 → 울산광역시 울주군 데이터센터
- 안 제11조 : 행정정보 → 전산정보 자료
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맞춰 조문 정비
 - 용어의 뜻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르도록 함(안 제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)
 -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(안 제4조)
 - 지능정보화책임관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(안 제5조제4항)
- 불필요한 조문 삭제
 -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 제3조(징수구분)제3항에 의거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부과 사항을 대체할 수 있어 해당 조문 삭제(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병수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서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 제3조제3항에 의거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부과 사항을 대체할 수 있어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음
- 제17조(시행규칙)는 일반적 시행규칙 위임 조항으로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삭제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짐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5. 소수의견 : 없음